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7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김태호·성일종·이인선

진종오 • 유용원 • 박충권

조경태 • 윤영석 • 이상휘

윤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 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10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영향"을 "환경영향, 지역주민의 사유 재산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	② <u>5년마다</u>
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	
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	
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	
에 반영하여야 한다. <u>다만, 도</u>	<u><단서 삭제></u>
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	
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	
<u>할</u> 수 있다.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③
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	
리 여건, <u>환경영향</u> 등을 고려하	<u>환경영향, 지역주민의</u>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유재산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